

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---|
| 의안 번호 | 20-105 |
|----------|--------|

제출년월일 : 2020. 09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보행이 어려운 취약계층 노인 등의 불편 해소 및 노인을 공경하고 섬기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노인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보행보조차 지원 및 표창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(성인용 보행기 지원 규정 신설)안 제10조제3항

- 거동이 힘든 취약계층 노인 등의 불편해소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

나. (구청장 표창 수여 규정 신설)안 제12조

-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며 노인공경 분위기를 형성

4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
- 2)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- 3)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20. 7. 16. ~ 2020. 8. 5.
- 2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- 3)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- 4)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
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구청장은 보행이 어려운 취약계층 노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2조(표창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.

1. 노인공경의 모범을 보인 개인, 단체 또는 기관
2.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한 개인, 단체 또는 기관
3. 모범노인 등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|
| <p>제10조(취약계층 노인 등 지원) ①·② (생략) <u><신설></u></p> | <p>제10조(취약계층 노인 등 지원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구청장은 보행이 어려운 취약계층 노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|
| <p><u>제12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</u></p> | <p><u>제12조(표창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노인공경의 모범을 보인 개인, 단체 또는 기관</u> <u>2.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한 개인, 단체 또는 기관</u> <u>3. 모범노인 등</u> |

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제10조(취약계층 노인 등 지원) ③ 구청장은 보행이 어려운 취약계층 노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다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시행에 따른 비용이 연간 1억 미만임.
- 2020년 취약계층 보행보조차 예산 4,725,000원

4. 작성자 :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박다미 (☎ 3153-8854)